

상주시 공고 제2023-605호

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상 주 시



「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」
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개정(2021. 12. 시행)에 따라,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대표협의체의 기능 중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」에서 규정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수행.(안 제4조 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: 사회복지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·시청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할 곳

- 연락전화: 054) 537-7320
- E-mail: richardsj@korea.kr
- FAX: 054) 537-6509
- 우편: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, 사회복지과

4. 그 밖의 사항

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)

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: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